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생략)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연 락 처	(044) 215 - 5536